

## 추가약정서

### (‘모두 다 하나 오토론’ 금리감면용)

|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 담당 | 책임자 | 관리자 | 부점장 |
|-------------|----|-----|-----|-----|
|             |    |     |     |     |

주식회사 **하나은행** 귀중  
본인은 하나은행(이하 “당행” 이라함)과 약정한 20 년 월 일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대출 실행시 아래 선택된 금리감면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 포함 모든 항목에 대해서도  
매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됨에 동의합니다. 매월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됨을 확인합니다.

| 감면항목                                 | 감면조건  | 감면금리   |
|--------------------------------------|---|--------|
| <input type="checkbox"/> 급여이체        | <b>매월</b> 당행에 등록된 <b>급여일자</b> 에 (전후 1영업일 포함 총 3영업일) 당행 본인 원화계좌로 건당 50만원 이상 타인으로부터 입금된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조건입니다.<br><b>※ 재직회사가 변경되거나 급여일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급여가 이체되기 전에 반드시 당행에 통보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b> | 연 ( )% |
| <input type="checkbox"/> 제후 보험사 자동이체 | 제후 보험사 : <b>하나손해보험</b><br>당행 본인 원화계좌에서 제후 보험사의 보험료가 <b>CMS자동이체</b> 방식으로 연1회 이상 인출되는 조건입니다.<br><b>※ CMS자동이체 이외의 방식(편뱅킹, 카드납부, 가상계좌 이체, 계좌 즉시출금 등)의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b>                 | 연 ( )% |

감면조건 세부사항은 「**별표**」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별 감면조건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본인은 이 추가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본인) (인)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표」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별 감면조건 세부기준

| 감면항목               | 감면조건   | 확인                           |
|--------------------|--|------------------------------|
| <p>급여이체</p>        | <p>급여이체는 <b>매월 50만원<sup>주1)</sup> 이상의</b> 급여성 자금이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계좌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리감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p> <p>주1) 아래 1의 방식은,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만 인정되며, 아래 2 및 3의 방식은 ‘월합산’ 50만원의 경우도 인정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손님이 직접 ‘<b>급여일</b>’을 지정(등록) 하고, 전후 1영업일 포함 총 3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 (카드대금, 보험료, 수수료 등 비급여성 자금은 제외)이 입금 될 경우</li> <li>2. 자금이체시 ‘<b>적요</b>’란에 <b>급여</b>로 추정되는 문구<sup>주2)</sup>가 포함될 경우<br/>                     주2) 급여로 추정되는 문구는 급여, 임금,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BONUS, PAY, SALARY, 등록직장명 등이 있으며, 급여로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문구가 발생할 경우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 건강보험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하며, 영업점 창구 통장거래 및 자동화기기 입금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li> <li>3. 자금이체시 은행간 처리구분 코드<sup>주3)</sup>가 급여 유형으로 이체될 경우<br/>                     주3) 은행간 처리구분 코드에는 급여 및 상여코드 이외 4대 공적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4대 공적연금은 인정금액 기준(50만원 이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li> </ol> <p>※ 위 2 및 3의 방식은 손님이 소속한 단체의 급여이체 처리방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b>사전에 ‘급여일’ 등록을 통해 급여 인정 누락을 최소화</b> 하시기 바랍니다.</p> <p>※ 이직 등으로 재직회사가 변경되거나 급여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b>변경된 급여가 이체되기 전에 반드시 당행에 통보</b>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br/>                     [ 변경 등록방법 : 당행 하나원큐 앱(‘급여일 등록/변경’ 메뉴), 당행 고객센터 (1599-1111), 인근 영업점 방문 등 ]</p> | <p>채무자(본인)</p> <p>(서명/인)</p> |
| <p>제휴 보험사 자동이체</p> | <p>당행 본인 원화계좌에서 <b>하나손해보험의 보험료</b>가 인출되는 조건이며, <b>CMS자동이체</b>방식으로 <b>연1회 이상</b> 인출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CMS자동이체</b> 방식이란,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손님 계좌에서 보험료가 자동인출되는 방식입니다. 보험상품의 종류 및 인출되는 보험료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CMS자동이체 방식 이외의 방식(편뱅킹, 카드납부, 가상계좌 이체, 계좌 즉시출금 등)의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li> <li>2. 실적대상월을 기준으로 연1회(실적대상월 포함 12개월 이내) 이상 인출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됩니다.<br/>                     [예시] 2026년 4월(실적대상월)실적 충족이란, 2025년5월1일~2026년4월30일(실적대상월 포함 12개월 이내)에 <b>하나손해보험의 보험료</b>가 <b>CMS자동이체</b> 방식으로 1회 이상 인출되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li> </ol>   | <p>채무자(본인)</p> <p>(서명/인)</p> |



|      |  |        |
|------|--|--------|
| 공통사항 | 매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며, 기준이 되는 <b>실적 대상월</b> 은 아래와 같이 이자 납입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 이자 납입일   | 실적 대상월 |
|      | 1일~17일   | 전전월 실적 |
|      | 18일~말일   | 전월 실적  |
|      | 예시   |        |
|      | 이자 납입일 : 7월 10일<br>실적 대상월 : 5월(5.1~5.31의 합산)   |        |
|      | 이자 납입일 : 7월 25일<br>실적 대상월 : 6월(6.1~6.30의 합산)   |        |
|      | <p>※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중 이자 납입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매월 결산일에 이자가 납입되며 실적대상월은 '전전월 실적' 입니다.</p> <p>※ '신규주4'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일 포함 2개월은 실적확인이 유예됩니다.<br/>[예시] 1월중(1.1~1.31) 실행된 신규대출에 대하여, 1월 및 2월은 실적확인이 유예(실제 부수거래 감면조건 미충족시에도 실적 충족으로 간주) 되나, 3월중에는 부수거래 감면조건을 충족해야 항목별 감면금리가 적용됩니다.</p> <p>주4) 신규성 거래에는 채무인수, 대환, 재약정을 포함합니다.</p> <p>※ 대출의 기한연장 및 조건변경의 경우에는 실적확인 유예가 없으므로, 매월 부수거래 감면조건을 충족해야 항목별 감면금리가 적용됩니다.</p> |        |
|      | 채무자(본인)<br><br>(서명/인)  |        |

